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03호 2023. 9. 11.(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78호(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79호(도시계획시설(공원: 어린이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8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8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90호(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임시 폐지 행정예고) 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93호(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20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71호(도시계획시설(공원: 간도장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7

회							
람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연수구청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9. 04. ~ 2023. 09. 30.(27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차 명	운행정지 요청일자	사 용 본 거 지	운행정지 사 유
116주4245 WBA7W2101MCG13269	비*****	BMW 745Le iPerformance	2023.08.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86어5757 WBA31AL04M7J67886	비*****	BMW 220i Gran Coupe	2023.08.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0보7726 WBAKV210XJ0Z80744	비*****	BMW X5 xDrive40i	2023.08.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22두2162 WBA71BH01PWX91803	비*****	BMW 530i	2023.08.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57더5650 W1K5J4HB5MN162964	비*****	Mercedes-Benz CLA250 4MATIC	2023.08.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03너3669 SALRA2BK0KA088701	비*****	디스커버리 TD6	2023.08.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77더2523 WBACW2105M9H36004	비*****	BMW X7 xDrive40i	2023.08.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1어8930 JNKDV71E5FM531040	비*****	INFINITI Q50 2.2d	2023.08.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82가4001 BMW 620d	비*****	BMW 620d	2023.08.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75나7884 WMW71BB08M2N95336	비*****	MINI Cooper D Clubman	2023.08.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79나6929 WMW31BS01N3P25838	비*****	MINI John Cooper Works Countryman ALL4	2023.08.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0구8662 WBAKV4103F0H13838	비*****	BMW X6 xDrive40d	2023.08.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88마8225 KMFZCZ7KBHU339441	이**	포터 II (PORTER II)	2023.08.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는 동법 제82조(벌칙)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동법 제8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749-88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3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어린이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 어린이공원)
- 명 칭 : 향나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65.9㎡ ※ 지적확정토지 면적 적용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56번길 8-14 청학프라자 6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5. 3. 1.
- 준공(예정)일 : 2026. 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행자 부담 /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참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44호(2022. 6.21)】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3. 9. 6. ~ 9. 20.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4층)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용 지 조 서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 목	공 부 (㎡)	편입면적(㎡)	잔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3,292.7	344.1	2,948.6					
1	청학동	95-8	도	1,602.0	22	1,580.0	-	인천광역시 연수구			
2	청학동	95-11	대	175.0	16	15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 2***동 3**호	정**			
3	청학동	97-3	대	407.0	11	39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	송도영남아파 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4	청학동	97-8	대	123.0	27	9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	송도영남아파 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5	청학동	615	도	985.7	268.1	717.6	-	인천광역시			

※ 편입토지조서(344.1㎡) 면적과 지적확정토지(365.9㎡) 면적이 상이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정이유

-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원대상자 (안 제3조)
- 지원내용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631 FAX 749-762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 붙임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임대료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①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해당 대상자(그 친족을 포함한다)가 직접 하거나, 제5조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내용 및 범위 등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운용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기존)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5조)

- 수입금 납입고지 변경(안 제6조)
- 문구 조정 및 띄어쓰기(안 제1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사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691 / FAX 749-761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26조”를 “「의료급여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 중 “세입하고”를 “세입으로 하고”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를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중”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 ----- ----- ----- -----.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u>세입</u>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u>급여대상자</u>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 ----- ----- <u>세입</u> 으로 하고, ----- <u>수급권자</u> (이하 “수급권자”라 -----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u>관하여</u> 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 <u>관하여</u> ----- ----- ----- -----.

제6조(수입) ① (생 략)	제6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u>지체 없이</u>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 <u>지체 없이</u> ----- -----.
제10조(준용) 이 <u>조례</u>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 -- <u>조례</u> 에서 ----- ----- -----.
제11조(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u>제9조</u> 에 따른다.	제11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지방재정법」 제9조-----.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임시 폐지 행정예고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시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임시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임시 폐지하며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지내용

구분	주차장명	위치	폐지면수	비고
노외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연수동 587번지	94면	

나. 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7월(공사 착공일로터 10개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3. 9. 8. ~ 2023. 9.27.(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교통행정과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 032-749-8752
- 팩 스 : 032-749-8749
- 전 자 우 편 : yljh2@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년 9월 27일(수) 까지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임시 폐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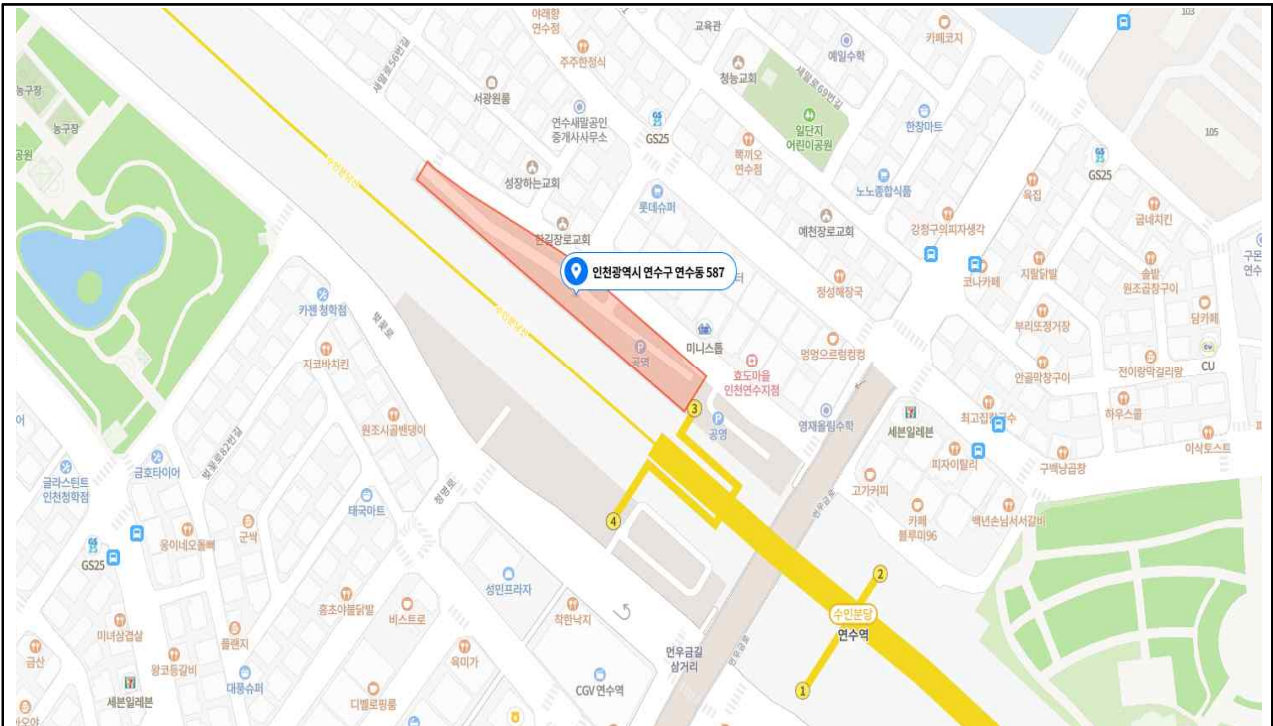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차장명	위 치	폐지예정 주차면수	비고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연수동 587	94면	



위치도



현장사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국민체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구성 및 직무(안 제2조~제4조)
- 인사위원회 및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조~제6조)
- 자격요건, 채용, 직권면직, 복무 규정, 보수 등 (안 제8조~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749-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323, FAX 749-7289
- E - mail : sujeong126@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종목)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종목은 카누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감독·코치)와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① 경기부의 인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도자 및 선수, 인권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자격요건) 단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제10조(채용) ①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면직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제12조(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단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경기실적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겸직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복무) 훈련시간, 휴가, 합숙소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징계)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
리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등) ① 감독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
회의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간도장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간도장소공원)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127-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간도장소공원)
- 명 칭 : 간도장소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간도장 소공원	도시 공원	269	269	-	2022.10.31. (인고 제2022-297호)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선학동	127-4	대	269	269	국 (기획재정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